

사회복지법인 하트-하트재단 제135회 이사회 회의록

일 시 : 2020년 10월 16일(금) 17:00-18:00

장 소 : 하트-하트재단 4층 회의실 (송파구 송이로23길 34 소재)

참석이사 : 강훈, 김광희, 김동배, 오지철, 신인숙, 박영란, 최충림 (총 7 명)

의장 이사장 신인숙은 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본 회의 안건 정관변경(안) 심의

참 조 정관 신구조문 비교표

제1호 의안 : 정관 변경(안) 심의

의장은 133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[송파키움센터] 수탁 심사가 있었으며, 심의 결과 [가락2동 송파키움센터]를 수탁하였음을 설명하다. 재단은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수탁을 계기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며, 아동복지법 제44조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

이에 김동배 이사의 동의와 박영란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일치로 본안이 통과된다.

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,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20년 10월 16일

사회복지법인 하트-하트재단(한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34 (가락동)



의장 이사장

신 인 숙



이 사 강



이 사

김 광 희



이 사

김 동



이 사

오 지 철



이 사

박 영



이 사

최 충 림



감 사

손 민



감 사

최 원



사회복지법인 하트-하트재단 정관변경 신구조문비교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4조 (사업의 종류)</p> <p>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②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③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④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⑤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⑥ 해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⑦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	<p>제4조 (사업의 종류)</p> <p>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②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③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④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⑤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⑥ 해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⑦ 아동복지법 제44조 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⑧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에 따른 목적사업 변경